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국정과제 수행 등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 공급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협상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 1명을 정규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소속기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41조의7, 부칙372호, 부칙376호, 별표 5, 별표 6)

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

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실로 이관

2)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첨단산업정책관 내의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기전자과에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

2) 원전수출 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나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원전수출 기능을 총괄 조정

3) 에너지산업실의 명칭을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에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여 이관하면서 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고 에너지산업실의 온실가스감축팀을 폐지

4) 한시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관 도래로 폐지하면서 실 내 정책관등 2명 정원(고위나 2명)을 통상정책국에 신통상전략지원관 및 통상교섭실에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신설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신통상전략 및 디지털경제, 기후에너지 통상 분야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를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 5)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내에 통상국내정책과와 활용촉진팀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로 이관
- 6) 기획조정실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와 통합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안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39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부칙356호)

-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이의 하부조직인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명칭을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 소재부품장비개발과로 변경
- 2)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두었던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

비제로 설치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 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 소관 2개 정책관을 개편하여 통상교섭실 및 통상정책국에 각각 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었던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3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
- 4) 신통상질서전략실 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 중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로 이관하며, 통상법무기획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통상교섭실 내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28일로 하는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을 신설

- 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국내대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면서 통상 국내대책 업무와 홍보 업무를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 및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로 각각 이관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6.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90 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5호 중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점검”을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사이버 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를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실시”로 하며, 제10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1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15.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을 “제76호부터

제89호까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제8항, 제9항,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 및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55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산업일자리혁신과·산업환경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기계로봇항공과·자동차과·조선해양플랜트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반도체과·배터리전자과·바이오융합산업과·섬유탄소나노과·화학산업팀·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육성
8.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9.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10.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의 운용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부품·장비의 전문화·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
19. 디자인·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지도 및 지원
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
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5.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6.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외국인 투자유치·해외투자 지원·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8.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귀금속, 약

기, 안경, 비누·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9.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40.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3.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⑱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반도체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배터리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전자산업(다만,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중전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배터리·전자·전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4.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㉔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㉔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 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
31. 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㉔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중간원료·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
3.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8.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㉕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

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 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 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산업기반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중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견기업혁신과장”을 “중견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사업화 총괄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지원과·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의 제목 “(에너지산업실)”을 “(에너지정책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산업실장”을 “에너지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7호부터 제3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정책관·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⑦ 에너지산업실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효율과·에너지기술과·온실가스감축팀·전력산업정책과·전력시장과·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력계통혁신과·재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산업과·재생에너지보급과·수소경제정책과·수소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19. 에너지·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조정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24.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25.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6.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7.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28.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9.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31.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33.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5.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에너지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40.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4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0.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제10조의2제3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상정책국장”을 “통상정책국장과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미주통상과장·구주통상과장·신통상전략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15.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1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

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7.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총괄

19.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0. 그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하 이 항에서 “신통상”이라 한다)

규범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신통상 규범 관련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신통상 규범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신통상 규범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무역·통상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가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5. 경쟁·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6. 환경·에너지·생물다양성·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양자·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8.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 법·제도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에너지통상 규범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관련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기후에너지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에너지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기후에너지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

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 제8호부터 제11호,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통상협정활용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통상법무기획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통상분쟁대응과·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자유무역협정상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 비관세장벽 · 정부조달 · 경쟁정책 · 환경 · 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 · 연구
-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 · 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 · 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 · 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 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 · 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 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 ·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⑱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14조제6항 중 “수출입과·통상국내정책과·활용촉진팀”을 “수출입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7(원전전력기획관) 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부칙356호제2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372호제2조와 부칙376호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935”를 “958”로 하고, 일반직 계 “924”를 “94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9”를 “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 “48”를 “5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원·학예연구원·편사연구원·농업연구원·임업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71”를 “73”로 하고, 행정사무관 “62”를 “63”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원·학예연구원·편사연구원·농업연구원·임업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기상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270”를 “280”로 하고, 행정주사 “21”를 “2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0”를 “19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5”를 “1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935”를 “959”로 하고, 일반직 계 “924”를 “94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9”를 “3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8”를 “51”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71”를 “73”로 하고, 행정사무관 “61”를 “6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95”를 “305”로 하고, 행정주사 “21”를 “2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사회복지주사·감사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항공주사·방재

안전주사·공업연구사·학예연구사·편사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82”를 “18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농업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항공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49”를 “50”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통계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사서서기·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5”를 “14”로 한다.

별표 4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7”를 “1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를 “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0”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를 “0”로 하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1”를 “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를 “10”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17”를 “16”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6”로 하고, 행정사무관 “8”를 “7”로 한다.

별표 4의2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7”를 “15”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5”로 하고, 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를 “2”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0”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를 “0”로 하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1”를 “10”로 하고, 일반직 계 “11”를 “10”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1”로 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17”를 “16”로 하고, 일반직 계 “17”를 “16”로 하고, 행정사무관 “8”를 “7”로 한다.

별표 5에 1), 2), 3)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고,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무역투자실 기술안보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11)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56호, 부칙 제372호, 부칙 제376호,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자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8조의3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무역투자실 기술안보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에너지산업실 전력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5)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6)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7) 에너지산업실 전력계통혁신과	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8)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보급과	2명 (4급 1명, 5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9) 에너지산업실 수소산업과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0)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지역협력과	0명	2024년 3월 31일까지
11)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1조의6제2항 및 제41조의7제2항 관련)

1. 미래자동차산업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부감사관·공업연구관·학예연구관·편사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

2. 원전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2조 관련)

1.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

2. 제4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3. 제4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4. 제42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 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 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⑧ (생략)	제6조(기획조정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1. (생략)	⑨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삭제>
13. ~ 15. (생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실태평가 및 지도·점검 6. ~ 9. (생략)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테러대응 모의훈련 실시 11. ~ 12. (생략) <신설> <신설>	⑩ ----- -----.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 사·지도·점검 6.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공격·위 협 대응 훈련 실시 11.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지도감독 1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신설>

제8조(산업정책실)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및 제조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제57호부터 제61호까지 및 제76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생략)

<신설>

15.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산업공급망정책관·제조산업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

③ (현행과 같음)

④ 첨단산업정책관-----

제12조제3항제48호부터 제54호까지, 제76호부터 제89호까지의 -----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47호까지, 제55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

⑥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반도체디스플레이과 · 전자전기과 · 섬유탄소나노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항공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및 화학산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5. (생략)

⑧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7. (생략)

⑨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9. (생략)

⑩ · ⑪ (생략)

<신설>

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기계로봇항공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자과 · 바이오융합산업과 · 섬유탄소나노과 · 화학산업팀 · 디스플레이가전팀-----

-----.

⑧ -----

1. ~ 75. (현행과 같음)

⑨ -----

1. ~ 27. (현행과 같음)

⑩ -----

1. ~ 29. (현행과 같음)

<삭제>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 · 부품 · 장비 특별회계의 편성 ·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 · 육성

8.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9.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 · 분석

10.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정보

<신 설>	공유 촉진 및 지원
<신 설>	11.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신 설>	12.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 · 관리
<신 설>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 력 양성 지원
<신 설>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 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신 설>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의 운용
<신 설>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 는 사항
⑫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 29. (생 략)	<삭 제>
<신 설>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신 설>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 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 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 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 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 항
<신 설>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 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 · 시행
<신 설>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신 설>	8. 소재·부품·장비의 전문화·대 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9.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국 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 조정 등 지원
<신 설>	11.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 상 등 산업기반 조성

<u><신 설></u>	<u>12.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3.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u>
<u><신 설></u>	<u>14.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u>
<u><신 설></u>	<u>15.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u>
<u><신 설></u>	<u>16.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u>⑰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 ~ 16. (생 략)	<u><삭 제></u>
<u><신 설></u>	<u>⑰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신 설></u>	<u>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
<u><신 설></u>	<u>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신 설></u>	<u>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지원</u>
<u><신 설></u>	<u>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u>
<u><신 설></u>	<u>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u>
<u><신 설></u>	<u>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운영 지원</u>
<u><신 설></u>	<u>8. 엔지니어링 사업자·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지도</u>
<u><신 설></u>	<u>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u><신 설></u>	<u>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협력·융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u>

<u><신 설></u>	<u>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u>
<u><신 설></u>	<u>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u>
<u><신 설></u>	<u>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7. 디자인·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u>
<u><신 설></u>	<u>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확산</u>
<u><신 설></u>	<u>19. 디자인·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u>
<u><신 설></u>	<u>22.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u>
<u><신 설></u>	<u>2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u>

<u><신 설></u>	<u>지도 및 지원</u>
<u><신 설></u>	<u>2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5.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6.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7.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u>
<u><신 설></u>	<u>28.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9.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분석</u>
<u><신 설></u>	<u>30.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1.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3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u>

<신 설>	<u>· 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u> 7.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 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 축 및 관리 · 운영
<신 설>	8.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 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 원 및 특허활동 지원
<신 설>	9.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 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 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신 설>	10.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 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 쇄전자산업의 표준화 · 공용화 · 고 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 시행
<신 설>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 확산
<신 설>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 성 및 육성 · 지원
<신 설>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신 설>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신 설>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신 설>	17.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 한 지도 및 지원
<신 설>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 업 · 인쇄전자산업 · 내장형소프트 웨어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첨단 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삭 제>
<신 설>	<삭 제>
<신 설>	⑲ 배터리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신 설>	1. 배터리 산업 · 전자산업(다만, 디스 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발광다이오드(LED) · 조 명 산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광 산업, 충전기기(重電 器機) · 전선 · 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신 설>	2. 배터리 · 전자 · 전기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신 설>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신 설>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 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신 설>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 설>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 환 지원
<신 설>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 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 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 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신 설>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신 설>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신 설>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 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 체제 구축 지원
<신 설>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 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신 설>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신 설>	14.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 한 지도 및 지원
<신 설>	15.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기산업 에 관한 사항
<신 설>	⑳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시행
<신 설>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관 리
<신 설>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 축·관리
<신 설>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 동 등에 관한 법령 운용 및 제도의 연구·개선
<신 설>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신 설>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 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수출 입·내수·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신 설>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 유치·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신 설>	16. 소관 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신 설>	㉔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2. 섬유원료산업(화학·천연·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니트산업, 염색·가공산업, 패션·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패션산업의 생산

<신 설>	성 향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직물·의류·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칼라, 패션 서비스·비즈니스, 패션브랜드·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탄소섬유·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건축용, 수산·해양용, 의료용, 항공·우주용 섬유사·직물·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섬유산업 스트림(stream) 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신 설>	6. 화학섬유·염색가공·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신 설>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

	<u>상, 기술개발·기술융합화 등 구조 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u>
<신 설>	8.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신 설>	9.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섬유·패션·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신 설>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공급 안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신 설>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신 설>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신 설>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신 설>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신 설>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 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신 설>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신 설>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신 설>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u>추진 및 보급</u>
<신 설>	29. <u>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연구단체의 활동 지원</u>
<신 설>	30. <u>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운영</u>
<신 설>	31. <u>그 밖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32. <u>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u>
<신 설>	33. <u>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u>
<신 설>	㉔ <u>화학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신 설>	1.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신 설>	2.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중간원료·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u>

<신 설>	3.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u>
<신 설>	4.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u>
<신 설>	5.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u>
<신 설>	6.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조성</u>
<신 설>	7.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u>
<신 설>	8. <u>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u>

	<u>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9. 소관 산업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1.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u>
<u><신 설></u>	<u>12. 소관 단체·협회·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u>
<u><신 설></u>	<u>㉓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신 설></u>	<u>1.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 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 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u>

	<u>인식 관련 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u>2.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 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u>
<u><신 설></u>	<u>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u>
<u><신 설></u>	<u>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u>
<u><신 설></u>	<u>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u>
<u><신 설></u>	<u>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u>

	<u>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u>
<u><신 설></u>	<u>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공용화·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시행</u>
<u><신 설></u>	<u>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u>
<u><신 설></u>	<u>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u>
<u><신 설></u>	<u>11.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u>
<u><신 설></u>	<u>12.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영상표시장치산업, 그리고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개인용 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증강(增強)현실 관련 산업,</u>

	<u>생체 인식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u>
<u>제9조 (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제9조 (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장-----</u> ----- ----- -----
② (생 략)	(현행과 동일)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 <u>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u> 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동일)
⑥ 산업혁신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혁신과·엔지니어링디자인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혁신과·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스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u>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개발과·산업기술시장혁신과·지역경제총괄과·지역경제진흥과·입지총괄과·중견기업정책과·중견기업지원과</u> ----- ----- ----- ----- ----- -----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u>⑩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u>	<u><삭 제></u>

사항을 분장한다.

1. ~ 45. (생 략)

⑪ ~ ⑭ (생 략)

⑮ 중견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 략)

⑯ · ⑰ (생 략)

제10조 (에너지산업실) ① 에너지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정책관 · 전력혁신정책관 ·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정책관 · 전력혁신정책관 ·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⑦ 에너지산업실에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효율과 · 에너지기술과 · 온실가스감축팀 · 전력산업정책과 · 전력시장과 · 신산업분산에너지

<삭 제>

⑪ ~ ⑰ (현행과 같음)

⑮ 중견기업지원과장은-----

1. ~ 24. (생 략)

⑯ · ⑰ (현행과 같음)

제10조 (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장-----

② -----

----- 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에너지정책관 · 전력정책관 · 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수소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에너지정책관 · 전력정책관-----

⑦ 에너지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 · 전력시장과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력계통과--

과 · 전력계통혁신과 · 재생에너지정책과 · 재생에너지산업과 · 재생에너지보급과 · 수소경제정책과 · 수소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 13. (생 략)

14. ~ 16. (생 략)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1.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4.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17. 에너지 ·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 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 집행의 조정 · 결산

19. 에너지 ·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조정

<신 설>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			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
<신 설>	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신 설>		항
<신 설>	22.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31.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 설>	23.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	<신 설>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
	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			제도 운영
<신 설>	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신 설>	24.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사업			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
<신 설>	25.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신 설>		련된 사항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			33.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
<신 설>	량 분석			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26.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신 설>		34.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적응 대책의 수립
<신 설>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신 설>		35.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27.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	<신 설>		36.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
	지침의 개발			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신 설>	28.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
<신 설>	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배			원
	출 기준 설정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신 설>	29.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	⑨ 에너지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⑨ -----	
<신 설>	급	분장한다.	-----	
	30.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	1. ~ 37. (생 략)		1. ~ 37. (현행과 같음)

<신 설>	38. 산업·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한 사항
<신 설>	39.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⑪ 삭 제	2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신 설>	40.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② (생 략)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41.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신 설>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삭 제>
⑩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5. ~ 28. (생 략)	15. ~ 28. (현행과 같음)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 장과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은 ----- -----
<신 설>	19.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디지털경제통상과·미주통상과 및 구주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미주통상과·구주통상과·신통상전략과·디지털경제통상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은 ----- ----- .
<신 설>	20. 탄소 포집·저장 및 이용에 관		

③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신설>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5.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삭제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신설> <신설>	③ ----- 1. ~ 13. (현행과 같음) 1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15.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발간 16. -----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17. ----- <삭제> ⑥ ----- 1. ~ 17. (현행과 같음) 1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총괄 19.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신설>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0. 그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21.. ----- 제20호----- ⑦ (현행과 같음)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하 이 항에서 “신통상”이라 한다) 규범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2. 신통상 규범 관련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신통상 규범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신통상 규범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	--	---

<신 설>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신국제무역·통상의제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신 설>	2.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신 설>	3. 국가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신 설>	4.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5. 경쟁·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6. 환경·에너지·생물다양성·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7. 그 밖의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양자·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8. 신국제무역·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 법·제도 연구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신 설>	⑩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기후에너지통상 규범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평가
<신 설>	2.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관련 주요국 정책·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신 설>	3.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신 설>	4. 기후에너지통상 규범 분야 자문 기구 및 협의체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신 설>	5. 기후에너지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신 설>	6. 기후에너지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신 설>	7. 기후에너지통상 현안 대응
<신 설>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신 설>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신 설>	10. <u>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u>	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 -----.
<신 설>	11. <u>산업·발전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
<신 설>	12. <u>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u>	<신 설>	-----제8호부터 제11호, 제15호부터 제22호-----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 설>	13. <u>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u>		⑤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 설>	14. <u>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u>		⑥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8. (생 략)
제13조(통상교섭실) ① (생략)	제13조(통상교섭실) ① (현행과 같음)		⑥ -----자유무역협정이행과·통상협정활용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통상법무기획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통상분쟁대응과·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을----- -----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u> 으로 하며, <u>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u>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u> 은 ----- -----.		⑦ ----- ----- 1.~ 8. (현행과 같음)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산업	③ -----		

⑦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신 설>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3. (생 략)	<삭 제>	<신 설>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확산
⑨~⑪ (생 략)	<삭 제>	<신 설>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신 설>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신 설>	⑩ 자유무역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용	<신 설>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신 설>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 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시행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신 설>	⑪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신 설>	
<신 설>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신 설>	
<신 설>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연구	<신 설>	

<신 설>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신 설>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신 설>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신 설>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신 설>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신 설>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

<신 설>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신 설>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신 설>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신 설>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 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신 설>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 무
<신 설>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 공
<신 설>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신 설>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보 고서 발간
<신 설>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신 설>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련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신 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신 설>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 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 한 업무
<신 설>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 무
<신 설>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 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 의 협상의 총괄·조정
<신 설>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 술규제에 관한 업무
<신 설>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 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 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 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신 설>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⑩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 식재산권, 무역 원활화에 관한 회 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 괄
<신 설>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 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 의 총괄
<신 설>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 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신 설>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 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 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신 설>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 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신 설>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 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 ·조정
<신 설>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 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신 설>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신 설>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 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의 총괄·조정
<신 설>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 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 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 한 업무
<신 설>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신 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 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⑪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 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신 설>	2.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 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 차 대응
<신 설>	3.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 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신 설>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

<신 설>	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제14조(무역투자실) ① ~ ⑤ (생략)	제14조(무역투자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통상국내정책과·활용촉진팀·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무역정책과·무역진흥과·수출입과·투자정책과·투자유치과·해외투자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
<신 설>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통상국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신 설>	⑱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삭 제>
<신 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환경 점검과 국내대책방안 수립 총괄	<삭 제>
<신 설>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삭제	<삭 제>
<신 설>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총괄	<삭 제>
<신 설>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업무의 총괄	<삭 제>
<신 설>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지원	<삭 제>
7. 통상협정 국회 비준동의 관련 관계 부처 협의 및 조정 총괄	<삭 제>
8.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삭 제>
9.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제도 의 운영	<삭 제>
10.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 추진	<삭 제>
11.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2. 통상협정 국내대책 관련 정부 홈페이지의 운영 · 관리	<삭 제>
13. 그 밖에 통상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 · 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	<삭 제>
⑪ 활용촉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정책 수립	<삭 제>
2. 통상협정 관련 국내 및 해외 활 용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삭 제>
3.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만, 국내대책과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	<삭 제>

항은 제외한다.	
4.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지원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사 례 분석 및 연구	<삭 제>
5. 통상협정 관련 해외활용 촉진 기반조성 정책 수립	<삭 제>
6.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 정보통 신시스템 개발, 보급 및 확산	<삭 제>
7.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삭 제>
8. 통상협정 관련 활용 지표 개발 및 분석	<삭 제>
9. 통상협정 관련 활용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및 지원	<삭 제>
10. 통상협정 관련 활용촉진을 위 한 교육의 실시	<삭 제>
11. 그 밖에 통상협정 관련 산업 및 기업의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⑫ ~ ⑰ (생 략)	⑫ ~ ⑰ (현행과 같음)
제3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 기획단) ①~⑨ (생 략)	<삭 제>
제41조(신통상질서전략실) ①~⑨ (생 략)	<삭 제>
제4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① · ② (생 략)	<삭 제>

제4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⑨ (생략)

제41조의5(국내대책과)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42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⑤·⑥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제41조의7(원전전략기획관) ①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42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

부칙 <제356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화학산업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372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온실가스감축팀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76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

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부칙 <제356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2024년 12월 31일 -----.

부칙 <제372호>

<삭제>

<삭제>

부칙 <제376호>

<삭제>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활용촉진팀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활용촉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총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 칙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56호, 부칙 제372호, 부칙 제376호,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8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약무주사·의료기술주사·전산주사 또는 수의주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	<신 설> <신 설>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과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자과장이 분장한다.
---	--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35	958	+23
·	·	·	
·	·	·	
일반직 계	924	947	+23
고위공무원단	29	32	+3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 업연구원	48	51	+3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 무관·공업사무관·통계 사무관·환경사무관·시 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 무관·사서사무관·기상 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 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	71	73	+2

관·의무사무관·약무사
무관·간호사무관·항공
사무관·부감사관·공업
연구원·학예연구원·편
사연구원·농업연구원·
임업연구원·해양수산연
구관·기상연구원·보건
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행정사무관

62

63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
계사무관·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보건
사무관·사서사무관·기
상사무관·사회복지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
무관·수의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
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간호사무관·항
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
관·부감사관·공업연구
관·학예연구원·편사연
구관·농업연구원·임업
연구원·해양수산연구원

270

280

+10

· 기상연구원 · 보건연구 관 · 환경연구원 또는 시설 연구원				
·	·	·		
·	·	·		
행정주사	<u>21</u>	<u>24</u>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 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 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 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				
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	<u>190</u>	<u>192</u>	+2	
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				
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				
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				
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				
는 시설연구사				
·	·	·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 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 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 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5</u>	<u>14</u>	-1
·	·	·	
·	·	·	
·	·	·	

[별표 3의2]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35</u>	<u>959</u>	+23
·	·	·	
·	·	·	
일반직 계	<u>924</u>	<u>948</u>	+23
고위공무원단	<u>29</u>	<u>32</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 업연구원	<u>48</u>	<u>51</u>	+3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 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 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 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 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	<u>71</u>	<u>73</u>	+2

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
연구원 · 학예연구원 · 편
사연구원 · 농업연구원 ·
임업연구원 · 해양수산연
구관 · 기상연구원 · 보건
연구원 · 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행정사무관

61

62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
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통
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
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
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
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
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
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
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
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
관 · 학예연구원 · 편사연
구관 · 농업연구원 · 임업
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
· 기상연구원 · 보건연구

295

305

+10

관 · 환경연구원 또는 시설 연구원				
·	·	·		
·	·	·		
행정주사	<u>21</u>	<u>24</u>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 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 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 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 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 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 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 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 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 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 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또 는 시설연구사	<u>182</u>	<u>184</u>	+2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 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 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 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u>15</u>	<u>14</u>	-1
·	·	·	
·	·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	·	·	
·	·	·	
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u>17</u>	<u>15</u>	-2
일반직 계	<u>17</u>	<u>15</u>	-2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u>	<u>2</u>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0</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u>0</u>	-1
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1	<u>10</u>	-1
일반직 계	11	<u>10</u>	-1
·	·	·	
행정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 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1</u>	-1
·	·	·	
·	·	·	
·	·	·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u>17</u>	<u>16</u>	-1
일반직 계	<u>17</u>	<u>16</u>	-1
·	·	·	
행정사무관	<u>8</u>	<u>7</u>	-1
·	·	·	

[별표 4의2]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	·	·	
·	·	·	
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u>17</u>	<u>15</u>	-2
일반직 계	<u>17</u>	<u>15</u>	-2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u>	<u>2</u>	+1
행정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u>0</u>	-1

·	·	·	
·	·	·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u>0</u>	-1
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1	<u>10</u>	-1
일반직 계	11	<u>10</u>	-1
·	·	·	
행정주사·공업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 주사 또는 전산주사	<u>2</u>	<u>1</u>	-1
·	·	·	
·	·	·	
·	·	·	
6.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u>17</u>	<u>16</u>	-1
일반직 계	<u>17</u>	<u>16</u>	-1
·	·	·	
행정사무관	<u>8</u>	<u>7</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5537